

□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수정(안)

제 출 (안)	수 정 (안)
<p>제 5조(직원의파견요청) 의장은 교육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 할 수 있다.</p>	<p>(삭제)</p>
<p>제 6조(시행규정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</p>	<p>(삭제)</p>